

우편일반

【 제2편 우편물류 】

□ 15페이지 (제1장 발착 및 운송작업, 4. 발송작업)

○ 다. 국명표의 사용 1)

현행	변경
1) 개념 우편용기의 도착/발송국번호, 용기종류, 서비스종류, 우편물형태 등 해당 운반차 (운반대) 나 운송용기 등의 운송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표지	1) 국명표의 정의 우편용기의 도착/발송국번호, 용기종류, 서비스종류, 우편물형태 등 해당 운반차 (운반대) 나 운송용기 등의 운송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표지

□ 40페이지 (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4. 우편물의 배달)

○ 바. 고층건물 내 우편물의 배달 6) 나) 【예시】의 내용 중

현행	변경
2. 우편물 수취방법 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취하여도 무방함 나. 주민등록증 지참	2. 우편물 수취방법 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취하여도 무방함 나. 신분증 지참

□ 43페이지 (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5. 등기취급부취급특수취급 우편물의 배달)

○ 마. 보험취급 우편물의 배달 4) 가) (3)

현행	변경
(3) 배달할 때에는 안심소포의 포장 상태, 파손, 무게 상이 등을 고객에게 확인하게 한 후 배달한다.	(3) 배달할 때에는 안심소포의 포장 상태, 파손, 무게 상이 등을 고객에게 확인하게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배달완료 처리한다.

□ 44페이지 (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5. 등기취급부취급특수취급 우편물의 배달)

○ 바. 증명취급 우편물의 배달 2)

현행	변경
2) 배달증명우편물의 배달	2) 배달증명우편물(배달증명서)의 배달

□ 44페이지 (제2장 우편물 수집 및 배달 5. 등기취급부취급특수취급 우편물의 배달)

○ 바. 증명취급 우편물의 배달 2) 나)

현행	변경
<p>(1) 배달증명서는 배달증명우편물 발송인 주소지 관할 집배국에서 출력하며 출력 기준일은 배달 완료 등록 후 D+2일 이다.</p> <p>(2) 배달증명서는 우편물 발송 시 발급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발송 후라도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우편물 배달 시 배달결과 (수령인명 · 관계 등)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p>	<p>(1) 배달증명서는 대상이 되는 우편물의 발송인 주소지 관할 집배국에서 출력하며 출력기준일은 그 우편물의 배달 완료 등록 후 D+2일 이다.</p> <p>(2) 배달증명서는 우편물 발송 시 발급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발송 후라도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p>

【 제3편 국제우편 】

□ 13페이지 (제1장 국제우편 총설 3-1 개요)

○ 다. 국제소포우편물

현행	변경
<p>라. K-Packet: 2kg 이하 소형물품의 해외 배송에 적합한 국제우편우편서비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계약고객 전용 서비스2) 주소 등 발송(접수)관련 정보는 계약고객전용 정보시스템(API)시스템을 통해 입력3) 다량 이용자에 따른 요금감액 혜택 제공	<p>1라. K-Packet: 2kg 이하 소형물품의 해외 배송에 적합한 국제우편서비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계약고객 전용 서비스2) 주소 등 발송(접수)관련 정보는 계약고객전용 정보시스템(API)을 통해 입력3) 다량 이용자에 따른 요금감액 혜택 제공

예금일반

【 제1편 금융 개론 】

□ 33페이지 (제2장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1-6. 금융유관기관)

○ 1-6-3. 예금보험공사

현행	변경
<p>특히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지점의 예금은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라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각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외화표시예금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p>	<p>특히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지점의 예금은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라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각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1인당 1억 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외화표시예금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p>

□ 41페이지 (제2장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2-1. 저축상품)

○ 2-1-4. 특수목적부 상품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현행	변경
<p>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최대 연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p>	<p>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최대 연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p>

□ 87페이지 [제3장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4-4. 주식과 채권의 비교]

○ 4-4. 주식과 채권의 비교

현행
그러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의 30%를 입금불산입하기 때문에



변경
그러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의 30%를 익금불산입하기 때문에

【 제2편 우체국금융 제도 】

□ 120페이지 [제5장 예금업무 개론 3-1 예금의 입금업무]

○ 3-1-3. 계좌송금

현행										
<표5-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신청 대상</td> <td>·'21. 7. 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3. 12. 3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td> </tr> <tr> <td>대상 조건</td> <td>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 (금융회사의 반환청구절차 결과 '반환거절' 또는 일부반환' 종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가능</td> </tr> <tr> <td>신청 가능 기간</td> <td>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td> </tr> <tr> <td>반환 지원 신청 절차</td> <td>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온라인 신청 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방문 신청</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내용	신청 대상	·'21. 7. 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3. 12. 3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대상 조건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 (금융회사의 반환청구절차 결과 '반환거절' 또는 일부반환' 종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	반환 지원 신청 절차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온라인 신청 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방문 신청
구분	주요내용									
신청 대상	·'21. 7. 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3. 12. 3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대상 조건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 (금융회사의 반환청구절차 결과 '반환거절' 또는 일부반환' 종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									
반환 지원 신청 절차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온라인 신청 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방문 신청									



변경										
<표5-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신청 대상</td> <td>·'21. 7. 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3. 12. 3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5년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td> </tr> <tr> <td>대상 조건</td> <td>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 (금융회사의 반환청구절차 결과 '반환거절' 또는 일부반환' 종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가능</td> </tr> <tr> <td>신청 가능 기간</td> <td>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td> </tr> <tr> <td>반환 지원 신청 절차</td> <td>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온라인 신청 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방문 신청</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내용	신청 대상	·'21. 7. 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3. 12. 3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5년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	대상 조건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 (금융회사의 반환청구절차 결과 '반환거절' 또는 일부반환' 종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	반환 지원 신청 절차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온라인 신청 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방문 신청
구분	주요내용									
신청 대상	·'21. 7. 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3. 12. 3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25년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									
대상 조건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 (금융회사의 반환청구절차 결과 '반환거절' 또는 일부반환' 종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									
반환 지원 신청 절차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온라인 신청 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방문 신청									

【 제3편 우체국금융 상품 】

□ 190페이지 [제8장 우체국금융 상품]

○ 1-1. 수시입출식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현행	
18) 우체국 매일 이자 파킹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돈 여유자금 매일 잔액 1천만원까지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정기 이자 지급일 외 고객이 이자 지급 요청 시 이자를 제공하는 통장 • 이 예금은 상품 우대이율을 포함하여 매일 잔액 1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 최고 연 2.0%,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연 0.55%를 제공 • 이 예금의 상품 우대이율은 매일의 잔액에 대해 다음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0.4%p를 제공 (연 %p) 	
우대조건	우대이율
이 예금 가입일에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처음 개설하는 고객인 경우 (1년간 적용)	0.4
정기이자 결산기간 중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의 평균 잔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0.2
정기이자 결산일에 이 예금 고객이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 적용)	0.2
정기이자 결산일에 이 예금 고객이 통합멤버십(잇다머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0.2
우체국공익재단 협약기관(한국회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기부신청 및 기부금(1천원~1백만원)이 1회 이체된 경우(1년간 적용)	0.2



삭제
<p>해당 내용 삭제</p> <p>우체국 매일이자 파킹통장은 판매한도가 (10만좌) 있는 상품이며 판매한도 달성에 따른 판매중지('25.11.25.)</p>